

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 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 KODEX Japan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[주식]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형 [주식]집합투자기구
- 다. 보관 · 관리기간: 2009.02.19 - 2010.02.18
-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투자신탁운용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대우증권, 유진투자증권, 메리츠증권, SK증권, 동부증권, 제이피모간증권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09.05.03	자통법전환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으로 전환	삼성 KODEX Japan 상장지수투자신탁	삼성 KODEX JAPAN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
2009.06.18	오류정정	제 20 조(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⑤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5 조에 의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	제 20 조(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⑤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54 조에 의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		제 32 조(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. 다만,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	제 32 조(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) ②...(같은)...,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.

		<p>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.</p> <p>제 35조(투자한도) 3.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제1호의 자산에 대한 <u>투자의 합은</u>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.</p> <p>제 36조(운용제한) ①1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100분의 10을 이내에서</u>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(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 제외)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</p> <p>제 46 조(신탁계약의 변경) ① 2. <u>제 34 조제1</u> 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한 신탁업자의 변경</p> <p>신설</p>	<p>제 35조(투자한도) 3.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제1호의 자산에 대한 <u>투자</u>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.</p> <p>제 36 조(운용 제한) ①1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100분의 10을 초과하여</u>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(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 제외)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</p> <p>제 46 조(신탁계약의 변경) ① 2. <u>제 32 조제1</u> 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한 신탁업자의 변경</p> <p>부 칙 제1조 (신탁계약의 효력 등)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.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신탁계약을 대체하고 이에 우선한다.</p>
--	--	---	--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 · 해임에 관한 사항

- 해당사항없음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
- 부합함

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적정함

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
- 공정함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
- 적정함

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
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
- 해당 사항 없음

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
배분되었는지의 여부
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
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
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
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
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